# 해커스 공무원 행정법총론 기본서, 이상현 (2016 초판) 1쇄 추록

최종 수정일 : 2016년 1월 28일

아래 추록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. 기본서 학습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.

## 행정법총론 2권

| 위치 | 현재 내용 | | 수정 사항 |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31p<br>㉣ 필요조치 | 안내판 설치 |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개보법 제25조제4항) | 안내판 설치 |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개보법 제25조제4항) | 2016.1.28 |
| | 안전성 확보 |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(개보법제25조제6항). | 안전성 확보 |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(개보법제25조제6항). | |
| 532p<br>(6)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 · 신고제도<br>④과징금부과 | 원칙 |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가처리하는주민등록번호가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·징수 할 수 있다. | 원칙 |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가처리하는주민등록번호가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·징수 할 수 있다. | 2016.1.28 |
| | 예외 | 주민등록번호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개보법제34의2조). | 예외 | 주민등록번호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개보법제34의2조). |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540p<br>9.벌칙<br>(1)형벌<br>②기타 | ②기타 : 위반의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동의 없는 제공,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규정 위반등)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영상정보처리기기, 금지행위, 비밀유지 규정 등 위반)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안전성확보, 정정·삭제 등에 필요한 조치규정 위반등)이 있다. | ②기타 : 위반의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동의 없는 제공,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규정 위반 등)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영상정보처리기기, 금지행위, 비밀유지 규정 등 위반)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(안전성 확보, 정정·삭제 등에 필요한 조치규정 위반 등)이 있다. | 2016.1.28 |

해커스 공무원 Pass.com